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광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8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고광민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재진, 김태수, 김현기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신복자, 유만희, 유정희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
이종환, 이희원, 임춘대,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정의, 적용범위, 운영관리체계 등이 개편되었으므로, 이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정의 조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함(안 제2조).
- 조례 적용대상을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 · 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부합하도록 하고,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임(안 제4조).
-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시 사용되던 용어 “운영 주체”를 “운영관리자”로 변경하고, 심의 기구에 “유치원운영위원회”를 포함하여 유치원 복합시설 설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(안 제7조).

라.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, 범죄예방디자인 기법 적용 기준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여 실행 기준의 명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(안 제8조).

마.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주체”를 “운영관리자”로 변경함(안 제10조).

바. 기타 자구 수정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운영관리자”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”를 “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운영 주체”를 “운영관리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학교운영위원회”를 “학교운영위원회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)”을 “(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시 고려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준 충족을 충족하여야

하고,”를 “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,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주체”를 “운영관리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「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」 제41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」 제4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학교복합 시설”이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, 생활체육시설, 평생교육 시설 등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 “운영관리자”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<p>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</u>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	<p>제4조(적용 범위) ----- -----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----- -----.</p>
<p>제7조(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) ① (생략)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7조(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<p>2.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<u>주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· 4. (생 략)</p> <p>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<u>학교운영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2. ----- 운영 <u>관리자-----</u></p> <p>3. ·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학교운영위원회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---.</u></p>
<p>제8조(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) ① (생 략)</p> <p>② 학교복합시설은 「건축법」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<u>기준</u> 충족을 충족하여야 하고,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8조(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시 고려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,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-----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)</p> <p>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<u>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주체로</u>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	<p>제10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) ----- <u>운영관리자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기관 간 협의) ① 교육감과</p>	<p>제11조(기관 간 협의) ① -----</p>

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· 조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「지방교육
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-----

-----.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정의)의 내용을 수정하여 '학교', '학교복합시설', '운영관리자'로 각각 정의를 세분화하였고,
- 용어를 수정(운영 주체 → 운영관리자, 학교운영위원회 → 학교운영위원회, 유치원운영위원회)하였으며, 현행 법령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